

제433회 국회
(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성평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2.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1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5.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3)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8)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2)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2)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6)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상정된 안건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3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 5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5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5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 9
2.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 9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 31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31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32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35
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36
1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36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36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38
15.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38
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53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53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3) 53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58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59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68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8)	68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2)	68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2)	68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6)	68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72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72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72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오늘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간사님이 조금 늦게 오시게 돼서 의사일정 3항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현재 위원 자격에 준하게 제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자격조건이 다르게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자격조건이 정부 행정부처 차관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그렇게 특별히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규 예, 차관님.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여폭방지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민간위원으로 똑같은 자격요건을 심의해서 임명하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3페이지 각주 2항에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의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항 1호는 정부 측 위원이고 4항 2호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민간위원의 요건인데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제2호에 따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을 받는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그게 규정상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위원회 규정 문구가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규정의 문구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포함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2호에 ‘이 경우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전진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라고 해서, 이를테면 중앙정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민간에다 넣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정부위원은 지금 중앙부처 차관으로 이렇게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했고, 민간위원이지만 우리가 각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법안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분을 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면 문구 자체를 원래 2호랑 비슷하게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문구는 나중에 좀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렇게 하면 지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구체적인 문구는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문제 제기하신 한지아 위원님이 이론이 없도록 문구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제10조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위촉, 대표 분야의 반영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대표 분야가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성폭력방지정책, 피해자 보호, 인권, 법률, 의료, 사회복지제도,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분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거와 다 똑같이 가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10시09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령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등 의견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초래로 보호비용 범위와 지원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성인지감수성에 편차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부처 의견과 관련하여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약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지자체는 더 강하게 하라는 의미의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는 14조 1항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인데 이거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바꾸는 이런 게 아니더라는 취지인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오해해서 한 군데서 우려를 표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 정부안의 법제처의 취지가 기존의 대통령령이랑 성평등가족부령은 전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고요. 추가로 하려는 그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것을 굳이 법에다 넣을 필요 있나요? 알아서 필요하면 조례로 자기 지자체별로 할 것 아닙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그 부분이 자치입법권 확대라고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조례 없이도 네 군데 정도는 정부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자치입법권 확대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례로 정할 경우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필요 없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요.

말씀하십시오.

○전진숙 위원 실제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줄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지금 14조 4호에 보면, 이 용어 자체가 보통 이렇게 쓰긴 하는데 자칫 이렇게, 지금 14조 4호에 보면, 이 용어 자체가 보통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럴테면 이 앞의 규정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거고 플러스알파를 이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 밖에’라고 하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위의 부분과 통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와 그 외에, 똑같은 말이라는 하지만 이런 문구에 관련해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 지금 14조 1~3호는 대개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비라든지 또 아동교육지원비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를 얘기합니다. 이 외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4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입법 근거를 마련해 놓는데 사실상 실제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나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 법률 근거를 이렇게 따집니다, 지방의회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진숙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근거가 뭐냐? 조례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충청북도는 신중검토, 그런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 이거는 그냥 오해라는 말씀이시라는 것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 때문에 사실상 1부터 3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대로 똑같이 가기는 하지만 나머지에 있어서는 차등이 생기는 건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충청북도도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은 지자체의 의견은 약간 하향 평준화 측면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따라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의지가 있는 단체는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정부안이기는 한데 일단 지자체가 아니면 피해자 단체들이 이해를 못 하면 먼저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와야지 그냥 딱, 신중검토 하는데도 정부가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오해면 다음에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보류하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항은 넘어가고요.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법률상 명칭과 실제 사용 명칭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 개정안과 같이 명시할 경우 보다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현행법 제33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해바라기센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약칭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해당 명칭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쟁점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정부는 해바라기센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법안에 대한 동의인 거고요 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아예 해바라기센터로 이름을 바꿔 달라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원래 법안과 정부안대로 해바라기센터 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 6항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쪽입니다.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행정기본법상 제재 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안 내용에 동의하시는 걸로 보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항 및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4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은희 간사님이 오셨으니까 원래 의안 순서인 1항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법안 중에 1항하고 2항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난번에 검토, 벌써 두 번 소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가부간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 가지고 먼저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구요. 위원님들이 오늘 일정이 바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신속하게 1·2항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2.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10시20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 들어오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2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쪽입니다. 1번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의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가) 결혼서비스업의 범위 등입니다.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같이 사진 촬영, 의상 대여, 미용 등을 예시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 의상 등 물품 대여, 미용 등 결혼 준비 일체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결혼식장대여업입니다.

해당 시설에서 결혼식 관련 서비스만 전업으로 제공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예식장과 같이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식장대여업은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 신고 대상 결혼서비스업의 범위 및 신고 요건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1인 사업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영세한 1인 사업자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1인 사업자가 대행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는 영세한 1인 사업자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인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법 제정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성평등가족부가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결혼서비스업 신고 대상에서 1인 사업자는 제외하고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대여업에 대해서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대상을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6페이지의 법조문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의 수정의견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5쪽의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성평등가족부 의견을 반영할 경우에 이렇게 정리되는 문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5쪽의 박스, 7조 말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7조.

○소위원장 김한규 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씩 논의를 하면, 아까 차관님께서 결혼서비스업의 정의 관련해서 먼저 의견이 있었잖아요. 수정의견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6페이지 수정의견 중에 결혼식장대여업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서 3페이지 하단의 결혼식장대여업을 정의하는 규정을 수정 제안한 겁니다. 3쪽 제일 하단에 결혼식장대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3페이지 하단의 그 박스 안에 결혼식장대여업을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게 6페이지의 제2조제2호 가의 ‘논의 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조항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인데 정의에 관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에 대한 게 있으니까 먼저 결혼서비스와 결혼서비스업의 정의에 관한 이런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성평등가족부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홍배 위원 지금 6페이지의 수정의견에 결혼서비스의 정의나 결혼 관련 사진 촬영, 의상 등 물품 대여, 미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에 결혼식과 관련된 의상, 촬영, 미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다른 이와 관련된 촬영이나 미용, 의상 등의 업을 하면서 또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안대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여서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포괄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사진을 결혼사진만 찍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결혼사진과 비결혼사진을 다 찍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그분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의견이 아니라. 안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으려고 결혼사진을 99% 찍고 돌 사진을 1% 찍어 버리면 다른 사진에 종사한다고 해서 빼 버리게 되면……

○김남희 위원 사진촬영업은 안 들어가요. 규율 대상은 사진촬영업, 의상대여업, 미용제공업은 아니고 이것들을 통으로 해서 스토어를 하는 그런 준비대행업,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업체만 대상인데 그런데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은 결혼 말고 다른 돌잔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대행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홍배 위원 6페이지 수정의견에 말씀하신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고 촬영·의상·미용 제공 행위, 나에는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것은 결혼서비스라는 정의에는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김남희 위원님 맞지요, 제 이해가?

○김남희 위원 예.

○박홍배 위원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 좀 여쭙보고 싶은 게, 지금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과 가격들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법상의 결혼서비스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현재 공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은 공정위의 가격표시 그런 고시 기준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법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면 공정위의 가격표시 규제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제외될 수 있군요.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는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신고 대상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면 좋겠고요. 신고는 9페이지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정부 측 의견은 수정의견에 대해서 또 어떤 보완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페이지의 그 박스 안에 정리해 놓은 게 정부 의견입니다. 5페이지의 제7조제1항 그 부분이 정부 의견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수정의견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수정의견은 별도로 저희가 제시를 안 했고요. 이것을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 논의 필요라고 돼 있군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다만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1인 사업자를 의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인 사업자는 적용받지 않고 2인 이상, 그러니까 본인 대표자하고 피고용인 이렇게 최소한 2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 외에? 시설, 매출액 이런 요건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무소 소재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요건을 의도적으로 충족하지 않고 사무소를 안 갖고 집에서 근무하거나 그러면 신고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이 입법을 벤치마킹한 것은 결혼중개업법인데요, 결혼중개업법은 보증보험금과 중개사무소를 법률로 정하고 여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았고 최소한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여타 필요한 사업은 중개업법에 준해서 저희가 하위법령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2인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할 때 필요한 사무소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무리 적어도 아니면 건수가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되는 게 되는 거네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1인 사업자의 비율과 2인 사업자 이상의 비율이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난 2월 26일 날 업계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실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 얘기는 43% 정도가 1인 사업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1인 사업자가 많은데 이 1인 사업자까지 신고하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추후에 추이를 봐서 좀 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한지아 위원 단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1인이 많은지 2인 이상이 많은지 그런 통계가 혹시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신고 범위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도 우려를 표하셨듯이 편법 운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지금 통계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1인 사업자에서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지요. 원칙적으로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제도권 안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난 소위에서 김남희 위원님이나 서명옥 위원님이 주신 우려도 있고 하니 저는 1인 사업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부처에서는 신고요건 대안으로 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시했는데 기존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제안했었거든요. 지난 소위에서 대여업은 시설 요건이 필요하고 그런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얘기가 나오면서 1인 사업자 얘기가 나오면서 사무실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이 오가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수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1인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무실 시설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1인 이상이 기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인력과 시설 기준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인력은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준은 안 마련해도 사무실 조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사무실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회계사무소인데도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비용이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카페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런 데서 했었던 경험이 있고 만나는 장소도 스토메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요건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양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 사무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무소를 꼭 쓰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같은 것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가 있는데 사무실을 두게 하는 게 피해자 보호의 필수 요건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령 정하실 때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 성평등가족위에도 의견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조제1항 신고 조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수정의견처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5쪽입니다. 보험·공제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원활하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에 현재 결혼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는지와 향후 관련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보증보험 가입을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별도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은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사이에 우리 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관련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 유선으로 또 만나서 협의한 결과로 보증보험 상품 설계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유예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보험상품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예기간 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차관님,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고 얘기하시는…… 저는 수석전문위원이 무슨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의견……

○조은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조문은 살려 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처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신고 요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수정대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도 법체계상 괜찮은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 조치들, 시정명령 대상이 되거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조문은 그대로 놔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석전문위원과 차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7쪽 12조의 조문을 보시면 ‘가입하여야 한다’ 약간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조문을 두게 되면 별도의 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을 결혼서비스업자가 의무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에 보증보험은 신고 요건으로 두게 되면 보증보험을 중간에 해지했거나 만료, 재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요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과 별도로 보험공제 이 부분을 남겨둘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남겨 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12조는 조은희 위원님 안의 12조 내용을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보험이나 공제나 영업보증금 예치 선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데로 제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라거나 이용 건수가 많다가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건 기술적인 거니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면 되고.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험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보험상품이 안 나오면 여성가족부령에서 또 유예조치를 뒀하겠지요. 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뒀로 할 수

있더라든지 이런 선택지를 두고, 저는 이게 피해자 보호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험 가입 조항을 남겨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영명하십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왜냐하면 조은희 의원님 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수정의견 10조의 논의 필요 부분에는 조은희 의원님 12조항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조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1쪽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시 벌칙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시·광고법에 비해 제재가 약하므로 벌칙 및 과징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가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벌칙과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업 신고 대상에서 1인 사업자 및 미용 등 개별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1인 사업자 및 개별 사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성평등가족부 의견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1인 사업자 및 개별 사업자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식, 서비스 제공 횟수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인 사업자 및 개별 사업자를 신고·관리체계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결혼서비스 가격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과징금 규정은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할 경우 결혼서비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혼서비스의 품목 및 가격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시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지 대상을 제정안과 같이 ‘누구든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의 예에 따라 조 제목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1인 사업자 그리고 개

별 사업자가 결혼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하단에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저는 쟁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는 항상 법조문을 봐야 이해가 잘되는데 34페이지의 의원님들 안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4쪽입니다.

기존에 의원님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이 부분을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그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소위 때요. 그래서 표시·광고법과 동일하게 그 부분을 표시했구요. 2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할 때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에는 2년 이하, 1억 5000만 원 벌칙이 있고요 과징금 규정도 있어서 표시·광고법에 비해서 너무 제재가 약하다라는 의견이 지난 소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과 과징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하기로 하였고요.

기존에 성평등가족부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저는 벌칙은 2년 이하, 2000만 원으로 하고 과징금은 결혼중개업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벌칙 규정만 두는 게 어떤지 그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볼 때 차이점이 이런 것 같아요. 현행 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은 아니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지키면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했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 그때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거지요. 그런 건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시정명령, 영업정지까지 안 가고 일단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지난 소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소위 의견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의 지난 의견과 충돌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벌칙 제재 부분은 이주희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우리가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저는 수석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의견에 차관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는 건가요?

○조은희 위원 부당행위에 대해서 업체의 규모 여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결혼중개업법 역시 표시·광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기에 두는 것도 맞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에 준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동의한다. 정부 측 의견도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형사처벌 조항이 몇 조로 들어갑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26조(벌칙) 박스가……

○소위원장 김한규 26조(벌칙)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26조(벌칙) 1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게 표시·광고법하고 같은 수준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징역형은 같고요. 벌금형은 사실은 표시·광고법이 1억 5000만원 이하인데 그렇게 똑같이 하기에는, 그래서 징역형 2년에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벌금은 2000만 원 이하로 적게 했고.

만약에 결혼서비스업을 위반했을 경우에 두 조항이 두 법에 다 위반이 돼서 그러면 기소 자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할 여지는 있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이 법이 제정되면 표시·광고법보다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표시·광고 부분도……

○소위원장 김한규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 법조인들도 있는데 그 법에서 명확하게 일반법, 특별법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김남희 위원님, 이거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보다 처벌형만 낮게 했을 경우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낮게 하는 게, 처음 법을 만드니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벌금이라도 조금 낮게 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통일해야 된다고 하면 1억 5000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형이 꼭 낮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법정형이.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팬찮으시면 32페이지 상단 박스의 26조(벌칙) 신설 이 부분으로 갈까요?

○조은희 위원 예.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2000만 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정법인데 전체 조문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소위원장 김한규 하나의 방법은 저희는 점심을 먹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점심시간에 쭉 정리해 주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보여 주시는 거는 가능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박스 안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결혼중개업법도 3년 이하, 3000만 원 되어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2년 이하, 2000만 원, 자동차관리법도 2년 이하,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제정법이니까 전체 법조문이 완결된 거를 좀 보고 싶다는 말씀이라서……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안에는 3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3조요? 왜 3조가 나와요?

○김남희 위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제정안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0쪽 보시면……

○김남희 위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법대로 이 조항에 따라 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남희 위원 예, 이 법률에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6조 1항은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시는 걸로,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9쪽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가격정보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 품목 및 가격 등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과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표시·광고법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보완·수정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서비스의 가격 등 표시 내용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조은희 의원님 안에는 없고 전용기 의원님 안에 있는 거네요.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그다음에 표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난 전용기 의원안에도 없었는데 저희가 논의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되지 않냐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표시의무 관련해서 제12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그 문구가 어디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2쪽 수정의견 12조 제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

게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의견 제시를……

○소위원장 김한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도 규정을 합니까? 그냥 부처 간인데 협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다른 법에도 본인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요구할 경우에 법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해서 정한다는 위당을 저희가 넣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정도 협조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소위원장 김한규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군요, 저쪽이 협조 안 해 줄까 봐?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조은희 위원 공정위가 해 준다고,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반대였군요. 저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성평등가족부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전진숙 위원 저는 조금……

○소위원장 김한규 전 위원님.

○전진숙 위원 법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정도입니까? 그거는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성평등가족부령 만들 때 조율하면 될 건데 법안에다까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서 쓰는……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정위가 협의 안 해 줄 수도 있어서 강제로 끌고 오려고……

○전진숙 위원 아니, 안 해 줄 수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가격표시법을 가지고 지금 공정위가 가격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법이 들어오면 저희 법이 우선되니까, 공정위가 아예 빠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넣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전진숙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은 처음엔 같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네가 표시·광고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평등가족위에서 별도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너희가 만들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게 되면 양쪽 규정에 충돌이 생기거나 차이가 있을까 봐 의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도록 의무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전진숙 위원 많이 이례적인데요.

○소위원장 김한규 많이 이례적이지요.

○조은희 위원 의무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공정위가 반대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공정 위도 오케이 해 주셔서 이제 만사불여튼튼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진숙 위원님, 일단 한번 넣어……

○전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매 법을 할 때마다 어디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법안에 얹힐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거 새로운 하나의 사례가 돼 버릴 건데……

○소위원장 김한규 이 조항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면서 논의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처하고도 한번 논의를, 그쪽에서 문제 제기 안 하면 괜찮은데 전진숙 위원님과 같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안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5쪽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수정의견 제16조 1항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비용 청구와 관련 소비자가 이미 공급받은 서비스의 의미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결혼서비스의 비용 및 제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9쪽입니다. 재난상황 등에 관한 특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재난상황 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혼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제1급 감염병의 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상황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결혼서비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수정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1쪽입니다.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당연 폐쇄하도록 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당연 폐쇄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당연 폐쇄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지난 소위에서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의합니다. 제 단서를 빼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7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거부·기피 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업무의 현실적인 집행을 위해서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9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추가 보완·수정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가 제휴사업자별 서비스의 가격과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정보가 담긴 서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없었습니다.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조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2조 1항하고 2항이 서비스 주요 가격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 조항 위반인 경우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가격 공개하고 서면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그 제재가 제정안에는 없었는데요. 지난 소위 때도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서……

○전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소위원장 김한규 예, 전 위원님.

○전진숙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그걸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품목·가격 등 표시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의 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를 했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서비스의 가격과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가 담긴,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나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거나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는 300만 원이고 이거는 100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 다르게 과태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 표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제공하는 가격, 품목을 전부 표시를 하라는 의미고요. 계약할 때 그런 표시되어 있는 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부분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표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작성된 서면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표시하는 거는 위반했을 때 좀 더 중한 거고요. 서면 제공 안 한 거는 일반적으로……

○전진숙 위원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보통은 표시를 하게 되면 붙이거나 기본 배치를 하거나 다 하지 않는가요?

○조은희 위원 기본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계약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서면으로……

○조은희 위원 이미 돼 있는데 서면으로 안 했다고 또 1000만 원 하는 거는 과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과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조은희 위원 아니아니, 위원님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전진숙 위원 그러면 표시도 안 하고 주지도 않으면 1300만 원 과태료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각각 개별적으로.

○전진숙 위원 별건이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김남희 위원** 이하니까 꼭 그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전진숙 위원**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주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없고 재량에 맡기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대통령령에서 이제……

○**소위원장 김한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과태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61페이지 4항에 있다고……

○**소위원장 김한규** 61페이지 4항에요.

○**조은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있네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규** 예, 차관님.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죄송합니다마는 53페이지 4호에 ‘신고필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신설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요. 53페이지 22조입니다. 수정의견에 1·2·3호가 있는데 4호에 ‘제7조 6항의 신고필증의 게시의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거나 중요사항 누락 및 고의로 거짓된 신고필증을 게시한 경우’ 이게 들어가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시한 대로 그런 안으로 제정안에 신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고필증 신고하고 또 신고필증 게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조에서 신고필증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필증……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저 이해가 안 돼.

차관님이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이거 왜 뒀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잘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잘못 주셨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죄송합니다. 다른 조문을……

○**소위원장 김한규** 우리 1분만 쉬면서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차관님,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나누어 주신 자료 이거에 관련된 건가요, 추가로 주신 것?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53페이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1·2·3이 있고요 마지막 4호에 제7조 6항에 신고필증 게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고 영업할 경우에 이 신고필증을 게시한 자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팬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다시 60페이지로 가면 되나요?

○전진숙 위원 그런데 넘어가기 전예요, 위원장님, 이거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안을 저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00조가 됩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22조인데……

○전진숙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거는 22조로 들어가는 거지요, 수정안대로.

다시, 아까 60페이지였나요? 과태료는 1항을 신설하는 게 수정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내용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2쪽,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시 과징금의 상한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그때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근거가 뭐였지요, 위원님들이? 다른 법하고 비슷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개월 영업정지 기간하고 5000만 원은 좀 너무 과소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5000만 원은 6개월의 기간 매출액……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의 수익에 비해서 5000만 원은 과소하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보통 이런 경우는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하기 전에 사전 의견 청취해서 ‘영업정지 받을래,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래?’ 뭐 이런 거 의견 구하는 거잖아요.

○서명옥 위원 대부분 과징금 좋아하지.

○소위원장 김한규 1억을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영업정지를 차라리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5쪽,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또는

교육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정보제공,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부에서 지난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결혼서비스업자에, 신고하고 규제를 이렇게 받는 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지금 나눠 드린 그 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자의 지원 그리고 우리가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하면 각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책금융이나 정부에서 소상공인 우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논의를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65페이지에 있는 교육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가 제안하는 지원 조항은 그다음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법은 아니고 뒤에 보면 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재교육에 관련된 조항이 있던데 성평등가족부가 약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마 업체들은 되게 싫어할 내용이라, 하여튼 의원님들 안에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실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실…… 아니, 전문지식, 윤리의식 이런 거 교육한다니까 약간 좀……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의견 원래 없다가 새롭게 추가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새롭게 추가한 겁니다.

○한지아 위원 저번 소위 때 저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이지요?

○서명옥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난 2월 26일 날 간담회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예식장협회나 또는 스토메에 관한 이런 결혼서비스대행업에 대한 협회가 아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해서 소비자한테는 소비자 교육도 하고 또 결혼서비스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그 표현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윤리의식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의무인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닙니다. 권장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만약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실시하시는데 들어야만 합니까? 안 들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권고지 특별히 그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업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려면 이걸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 뭔가 지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준다 약간 이렇게 법이 들어온 느낌인데 저는 조금……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업체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거 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는 얘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위 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업종 중에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결혼중개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결혼중개업과 예식장업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데 결혼서비스업으로 우리 제정법 안으로 들어오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런 데 대한 이러한 교육도 한번……

○김남희 위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식장을 하는 사람이나 스토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조은희 위원 소위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그것은 제가 소위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김남희 위원님, 이런 업계에는 그 교육이라는 게 아마 소비자 보호 교육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도 좀 듣고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남희 위원 결혼예식장업이나 스토메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 시책을 교육을 할 게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또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일단 위원님들, 20조가 있고 21조가 있는데 21조는 소비자 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지금 저도 약간 김남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과징금을 물든 과태료를 물든 벌금을 물든 뭔가를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대체 소비자

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결혼에 관련된 준비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또 하나,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가부에서 이거 관련된 예산을 마련을 하고, 이를테면 이게 무슨 협의회가 되면 거기를 관리하고 교육을 위탁하고 이렇게 쪽 진행이 돼서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굳이 그런 예산을 소요를 시켜 가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 의문이 잘 안 풀립니다.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간담회 등을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더 취약하다 이런 게……

○전진숙 위원 그 소비자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이에요, 결혼을 앞둔 모든 국민들?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결혼을 앞둔 사람들……

○전진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 걸 하나고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 관계 기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상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러면 되고,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교육 장소에 모아 놓고 하는 거고 결국은 다 이게 위탁할 텐데 1년에 결혼하는 분이…… 결국은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는 민간 어딘가에서 해야 될 텐데, 물론 일자리 창출의 측면은 있겠지만, 이 교육은 일단 법 시행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교육은 그렇고요. 지원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혹시 미리 못 보셨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법안은 원래 전문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고 정부안 듣는 거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기본적으로 1인 영세사업자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막 사업자를 지원해야 되는지……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조항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뒤에 1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저희가 논의가 끝난 거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1인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지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1인 사업자는 신고는 안 하지만 너무 영세해서 소비자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별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여기 성평등가족부 안은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하여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한 대상자가 기준입니다.

○한지아 위원 신고한 대상자만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한규 결혼서비스업자가 신고한, 정의에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서비스업자는 이만큼 있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조항 자체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앞에서 정의에서 신고한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신고한 자로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신고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이 현행 법체계에서 고려해 볼 때,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만드는 건데 산업 지원 조항을 이렇게 법에 넣는 게 법체계상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어 가지고. 체계상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결혼중개업법에 이 유사 조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법조인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법체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제가 여쭙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보통 그 사업을 유도하거나 조장하거나, 그런 사업을 많이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의 그런 종류의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지원 조항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 조항은 있고요. 보통 소상공인 이런 지원은 재난법 이런 데서 약간 지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조은희 위원 관리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의견에 맡길게요.

○소위원장 김한규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저도 한마디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서비스업이 발전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결혼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서구 이쪽에 보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더 정착돼 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결혼업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개별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스몰 웨딩을 하기도 하고 진짜 결혼식을 아예 안 올리기도 하고, 웨딩사진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안 찍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 이렇게 대형화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훨씬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렇게 명시하고 지원을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1인 사업자를 서비스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주 목적인 법인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1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법,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핵심에 있어서 좀 비켜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사업장을 정말 우리가 제외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만약에 1인 사업장을 포함시키게 되면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 문구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만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궁금한 게, 혹시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건데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랑 논의를 하셨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부가 꼭 강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는 특별히 의견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국회 공청회 때 참석자분 중의 전문가께서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조하고 또 현장 수용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나아가 가지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 또 여러 가지 인식 제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없던 규제가 들어오는 거고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 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런 안을 냈습니다라는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대로 방향을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먼저 교육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교육 조항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위원들이 다수이신 것 같고요.

지원 조항은 어떠신가요? 지원은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서명옥 위원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문화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세대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 문화로 옮겨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직종 또한 틈새로 생긴 직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관리 조항에 지원 법까지 넣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굳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지원법 따로 있잖아요. 거기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일단 관리에 관한 법을 먼저 해 보고. 그렇지요? 또 결혼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육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서명옥 위원님이 약간 정리 멘트처럼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아마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규제법이 들어가고 육성 조항이 없으면 업계의 반발이 되게 커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일 것 같은데 법은 의원입법이니까요 비판을 받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받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육성 조항을 다시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원래 안에 없던 게 갑자기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기에도 너무 급박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것 같으니까 성평등가족부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6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법안소위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12번 제명 및 목적은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3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4번 실태조사는 수정 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5번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은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6번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는 조은희 의원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7번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8번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은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19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견이 없었던 사항이라 그냥 참고 삼아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뒷부분은 다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전부 다 살펴본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정법이고 또 두 의원의 법안을, 조문 체계가 다른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내용은 대략 이해는 되게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오후에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빠지실 것 같아서 의결정족수 때문에 오전에 논의를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문을 잘 정리해서, 어차피 전체회의가 일주일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소위원님들께는 문구 정리되자마자 미리 전해 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더라도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남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오후에 정족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2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한규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가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련된 내용의 일부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러는데 저한테 별도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구가 솔직히, 통과는 됐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손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의원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봐서 만약에 전진숙 위원님이 특별히 더 있으시면 전체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도 계속 의견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부터지요.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분들이 다시 바뀌셔서 잠깐만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2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권 25쪽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점심 약속들이 있으시니까 11시 50분까지는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당이 오후 1시 반에 의총이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오후는 2시 반에 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점심을 좀 천천히 드시는 것으로……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시33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5쪽입니다. 피해자 등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 및 보호비용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같은 차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중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범위, 지원시설 등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인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령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기관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견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자치입법권 확대인데 이 법에는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의 의견이 없고 아까 논의한 성폭력법에만 있는 게 좀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안 보시고 의견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보류를 했는데 이것만 통과시키기

가 그렇잖아요.

○전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견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견이 없는데 통과를 안 시킬 이유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충청도나 성폭력상담소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시 추가가 돼서 가면 자칫 정부에서 하던 이하로 지원되어질까 하는 그런 기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견이라기보다는 그런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차피 다음에 법안소위 할 때 이 법안은 먼저 통과시킬 테니까 아까 법안하고 동일한 취지라 이 부분도 동일하게 우려가 없도록 설명을 하고 한번 의견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7항은 논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1쪽입니다.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담소 등에 명할 수 있는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상담소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 시설의 폐쇄는 행정상 직접강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가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법안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9항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5쪽입니다.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스토킹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함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조치 등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다른 유사범죄 처벌과의 형평 성,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의 죄질 및 가벌성 정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항입니다.

시행일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입니다. 사법 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신속성·실효성 있는 규제 방식 인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력을 높여서 스토킹 재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면에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저는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가정폭력 방지에 대해서도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라 법무부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의결될 때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냥 무시하고 통과됐나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한규** 가정폭력 관련해서 그것도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통과를 시켰던 건데 법무부가 신중검토를 요청했는데 그래도 법사위는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구조네요, 법만 바뀌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38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방해는 그대로 500만 원 과태료로 남게 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조사 부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중으로 봤을 때 적절한 것인지 성평등가족부 관련 법안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형평성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차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본회의를 통과,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홍배 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배 위원** 개정해서 다 상향시켜야 된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과태료로 부족해서 벌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많지는 않고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스토킹은 경찰청에도 확인을 했는데 23년 7월에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건은 없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그런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해서 형벌로 올려야겠다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는데 먼저 형벌로 한다고 하니까……

○**전진숙 위원** 그건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스토킹을 당해서 여성이 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지금 문제인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 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하고 약간 다른 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징후 때문에 강력범죄로 나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 거부 행위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한 의미가 굉장히 커서 오히려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법목적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들이 먼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통과하는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만 원래 위성곤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인데 정부 측 의견은 수석전문위원하고 공포 후 3개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1시45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3쪽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해바라기센터 추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34조제2항제11호 관련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인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유사하게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 발생을 알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기관에 해바라기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46조제3항 관련입니다. 상담시설에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하여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률 지원을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편 해바라기센터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수사 지원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의 장도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 제23조에 해바라기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해바라기센터의 신고의무기관 추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추가 의견으로 친권상실 청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서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이 11항부터 14항인데 그래도 한 10분 남았으니까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1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11시47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1쪽입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유사 위원회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대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도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6쪽입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것은 1호부터 16호까지 현행과 같음이라서 소개가 안 돼 가지고 내용이 안 보이는데 아까는 정부의 차관하고 차관급하고 또 학식·소양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 1호부터 16호는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17호를 신설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 안인데 제가 설명해야 되지만 수석전문위원이 하시는 게 모양새가 맞는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각 차관이 부처별로 이렇게 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1호부터 15호까지는 정부위원들, 무슨무슨 부 차관, 무슨무슨 부 차관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청소년위원 그다음에 새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다른 법하고 동일하게 17호의 문항을 16호처럼 전문성과 경험 이 부분이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구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게 있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문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할 수 있게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항.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0쪽입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및 환경 등의 의제가 청소년정책과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시 50분이 되었으므로 식사와 휴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항부터인데요.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5.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5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제2권 63쪽입니다.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 및 법안 형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지자체별 보수 및 고용 안정성의 격차도 큰 실정이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나) 법안 형식입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발의하였고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제정법 형식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여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제정법 형식의 유사 입법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다는 점, 입법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처우 개선 등의 대상입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처우 개선 등의 대상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 등의 대상은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모두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다목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범위를 해당 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5쪽입니다.

(라)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정법 형식으로 입법화할 경우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의 제명 및 목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별법 제정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100여 종의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및 현장 인력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라남도도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청소년 기본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종사자도 청소년지도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조속히 추진,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에 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간, 시설 간 처우 격차 해소, 청소년정책 수행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처우 개선의 대상인 청소년지도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71페이지에 우리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국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나오고 저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월 기본급이 꽤 되는, 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2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당시에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못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당시 기재부랑 협의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맞춰 놓고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별 부처가 자기네 산하기관의 보수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성평등가족부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쪽에서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기준이 논리적인 게 아니고 연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아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평등가족부랑 논의해서 가능하면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평등·가족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월 280만 원 수준은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중의 일환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기재부는, 지금은 기획예산처는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올리려고 하는데 개별 상임위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담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할 걸 알면서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고요.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거는 청소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전 위원님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 갖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거는 지금 1번은 내용도 있지만 이 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김남근 의원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저랑 조은희 의원님 안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 거냐. 참고로 저는 별도의 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모델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례도 있는 거고.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청소년 기본법이 취지 자체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청소년에 관한 거라 종사자법은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랑 조은희 의원님이 제안한 법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성평등가족부의 수정의견처럼 청소년지도자라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적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뒷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 여기 성평등가족부의 수정의견에 보면 제정안에 청소년지도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1

쪽에 부처 수정의견을 내셨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서명옥 위원 거기 5호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해 왔거든요. 이 5번이 들어가면 처음에 수정의견으로 내신 모호한 측면하고 똑같지 않나 싶어서. 다 포함되잖아요, 5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단체 또는 기관’ 하면 청소년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무슨 의견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안 하고 가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과학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제외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성문화센터같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염두에 두고 5호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5호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또 하나는요, 저는 청소년지도사 관련된 여러 직능에게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직종별로 자꾸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도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데 사회복지사가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 관련 처우 개선을 별도의 개별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면 저는 우후죽순처럼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 개별법이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조금 염려는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신중검토 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부에서는 청소년 종사자들의 처우는 늘 열악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 청소년 또는 성폭상담소 같은 종사자들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대책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청소년 쪽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위원장님과 조은희 의원님의 그런 취지가 반영된 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진숙 위원님.

찬성 의견이시지요?

○전진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별도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법하고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제정법안에 동의를 합니다.

○전진숙 위원 제정법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서명옥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물론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덩치로 보면 사회복지 영역과, 여성복지도 사회복지 안에서도 있긴 하지만 또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지도사에 관련해서 상담사, 지도사 다 하더라도 큰 덩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직종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임금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그걸 점차적으로 지금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그 나머지의 차이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보완을 하는 방식이었다가, 아직도 임금 테이블이 잘 맞춰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법으로 해서 국가가 정한 그 법령에 맞춰서 다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것은 여성과 청소년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지도사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대체인력도 떨어지고. 또 실은 국가가 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공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보완해 내고 있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너무 열악한 상태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지도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만들어 내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국가가, 청소년을 챙기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으로서의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 법안을 가지고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을 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 제정법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영역이라고 서명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인 것 같은데.

처우가 열악한 직군이 많지요. 간호조무사도 그렇고요. 임상심리사분들도 사실상 별도 법안에 대한 요구가 큼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사의 임금표를 지금 활용 못 한다는 거지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담겨 있긴 있는데 별도 법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은 사실 약 11% 정도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서 아예 별도 법을 제정을 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게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격차가 좀 심해요.

○한지아 위원 아, 격차가 심해서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열악한 직군에 대해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과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11%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좀 더 다른, 그러니까 각 열악한 직종마다 법을 계속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한 그러한 처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생겼고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사회복지사업은, 이 두 분 보건복지위에 계신데 보건복지부 관할 법인데 거기에 가부터 허까지 쭉 나열이 돼 있고요. 물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평등가족이랑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몇 군데는 들어 있어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만 있고 저희는 이거를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정통적인 사회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업무랑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넣어 주고 있고 성평등가족부하고 관련된 것들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해당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장기 플랜을 갖고 넣겠다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이고요.

죄송한데 성평등가족부가 그 입장을 깨고 들어가서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성·청소년 유관기관을 우선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로 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법을 바꿔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바꿔 줄 것 같다, 재정적인 이유로. 제가 판단할 때 그 작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입법권으로 해야겠다 생각했고, 일례로 보면 일단 성평등가족위에는 벌써 법안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보건복지위 법안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그 법이 기본법이니까 그 법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위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여러 부처의 업무를 같이 고려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딱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어디 올려 주고 내후년에는 어디 올려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법을 바꿔서 기획예산처랑 싸우면서, 아마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세게 나올 텐데 그 과정도 법사위를 설득시키고 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시면……

○전진숙 위원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던 다양한 직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은 이렇게 다양한 직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상담사도 있고 활동지도사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을 국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직종은 아까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 주는 게 이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갖는 애정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참고로 차관님, 현재의 청소년지도사하고 청소년상담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로 나

가나요, 아니면 교육청도 같이 들어가나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청소년지도사하고 상담사가 저희 시설,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비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자율, 지방이양되는 사업도 있어서 지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도사하고 상담사가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시설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명옥 위원 결국은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예,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안 물어도 돼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쭙봤습니다.

○서명옥 위원 뭐라 그래요? 밑에 봤기는 봤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이거든요.

○전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과 국립과 구립이 이게 다 달라요. 구립 같은 경우는 구립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단체를 만들면 거기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요. 국립으로 내려가는 데는 매칭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는 보폭을 더 넓혀서 훨씬 많은 방식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공간을 자꾸 좁혀 가고 있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서명옥 위원 아니, 저도 전적으로 미래세대는 어차피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관심을 가지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예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서 위원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광주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 보냈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답을 안 한 것 같고, 특별히 반대하는 데는 없었네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하여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사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시고 가·나·다 호 말고 마지막 기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특히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제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3쪽입니다. 처우개선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제정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

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 및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김남근 의원님이 성평등가족위에 계실 때 법안을 내셨는데요. 지금은 나가셨으니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법안을 만들 때 김남근 의원님이 낸 법안 내용은 참고했기 때문에 취지는 조은희 의원님하고 제 안에도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항목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5쪽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와 시도에,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군구 차원에서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재정 투입 등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시군구에도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처우개선위원회에 유사 통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시군구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79페이지에 우리 부의 수정안을 냅니다. 시도와 시군구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조금 정비하고 줄이는 차원에서 유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처 수정의견 괜찮은데 궁금한 게, 제가 실제 사례를 잘 몰라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들이 지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시도에 청소년 관련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런 위원회를 조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군구 입장에서는 같이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주면 시군구나 시도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하지만 담당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죄송합니다.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정책관님.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속기사님께서 의사록 작성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 수정의견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1쪽, 보수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수 지침 마련 및 준수 노력 의무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보수 지침 마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마련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 개선에 국가재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침 준수 노력 의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보수 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김한규·조은희 의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3쪽입니다.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제정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비리 사실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 등의 은폐 방지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육아휴직 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청소년시설 등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여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마는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86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시설 등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2조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김한규 2조에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어떤 조항이 예시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의 6조 1항 및 2항과 관련한 내용 외에 다

른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홍배 위원 6조 1항·2항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6쪽의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의 1항·2항.

○소위원장 김한규 사실은 이 법에 있는 내용이 다른 법에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 다 있는 내용이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휴직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지요.

뭔가 법안을 내고 나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약간 채점하는 느낌, 평가 받는 느낌이군요.

박 위원님.

○박홍배 위원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제가 조항의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이, 유사한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업무의 결손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업무의 결손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하는 것은 모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가요? 그러면 6조는 1항만 놔두고 2항·3항은 빼도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3항도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게 2항밖에 없으니까. 1항은 근로조건이라기보다는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이런 거니까요.

○박홍배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이 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있는 수준으로 반영이 돼서 이 법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거기서 빼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고. 저도 지금 이 문장이 계속 걸려서, ‘다른 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문장이, 굳이 이거 안 들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여기서……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안 중에 아무래도 단체가 작아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강조한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6조에는 1항만 놔두고 2항·3항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9쪽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목적, 즉 조사 결과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내용 중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우리 부처 수장의견은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그에 대한 조치……’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가 불명확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사실은 앞에 근로여건, 보수수준, 지급실태랑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9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김한규·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제정법 형식으로 입법화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내용이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부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넘어오셨는데요,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저 앞에 7조인데 실제 지금 임금 테이블이나 이런 게 맞지 않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수준이나. 7조 1항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기 지금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가늠컨대 어쨌든 그냥 공포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낮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이랬을 때 개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일정 정도 견인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법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금도 아직 100% 임금 테이블에 정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열악한 상태 속의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데 앞에 가지고 있었던 법 안에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어쨌든 저희들이 임금 보전을 해 줘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앞에 다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항목을 계속 빼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이 말씀입니까?

○전진숙 위원 예.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 사회복지사법에는 이 문구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인권침해 실태 및’을 빼면서 ‘그에 대한 조치 현황’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수준 및 지금실태 그리고 인권침해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인권침해 실태하고 연계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실태가 우리 법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다 뒤집어 보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전체에 대해서 근로여건, 보수수준, 지금실태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낮거나 이런 것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더 보장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이걸 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실태하고 관련된다고 봐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보수수준이나 지금실태에 대한 조치 현황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또 굳이 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인권침해 실태를 뺀 게 저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사회복지사법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청소년지도자들 관련해서 인권침해 얘기를 특별히 들은 적은 없어서 이 법에 넣는 게 마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어서 뺐는데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법처럼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넣어도 되는 거지요.

○전진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권침해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조치 현황을 하자고 했던 내용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오히려 근로여건이나 보수수준, 지금실태에 관련해서 그냥 공포만 하고 놔두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을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보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걸 이야기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사실은 해석이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이 꼭 인권침해 실태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해서 근로여건이나 보수수준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그것도 공개하자라는 게 원래 제 취지였는데 정부가 그거 빼자고 해서 제가 동의했던 건데 전진숙 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다시 힘을 실어 주셨으니까 아직 의결하기 전이니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다시 넣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게 더 좋겠네요. 사회복지사 처우법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문구가 꼭 신법이 동일하게 해야 될 건 아니고 더 좋은 문구를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6항은 그렇게 표현을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7항 부칙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얘기하셨고 부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부처 수정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일부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1월 1일부터 하는 게 김남근 의원안이었고 올 1월 1일 이미 지나 버렸고 저랑 조은희 의원안은 지금부터 1년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예산을 고려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사위랑 전체회의 통과가 언제 될지는 모르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1월부터 반영하려면 사실은 보수기 때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쯤 해 뒤도 정부 예산안은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나오는 거니까 시간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하고요.

정책관님 표정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위법령을 만드는 기간과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만들고 현장 의견 듣고 직종 분류하고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1월 1일로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생각이 들어서, 얼굴에 드러나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본회의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6월 3일 전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도, 물론 제가 열심히 끌고 와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5월 달에는 본회의가 없고 4월이 마지막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책관 표정을 본 이상 그냥 넘어가기가 그런데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보수 지침을 보니까 생활시설·이용시설 호봉표를 다 만들고 기능직인지 관리직인지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할 필요가 있어서……

○전진숙 위원 표준안이 있구면. 표준안이 있으면, 지금부터 10개월이에요. 이왕 할 거면 서로 기분 좋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0개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이 법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차관님도 제정법에 대한 의지도 높으신 것 같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시 흐름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예산을 9월까지, 그게 표가 나와야지 예산을……

○전진숙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한 가지만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제정법으로 이렇게 쳐우개선위원회 또 보수 지침을 장관이 제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새로운 법률에 담게 되는데 지금 범정부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설치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주무 부처 장관에 대한 직접교섭 요구와 관련된 대응들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정법률안만 보자라고 하면 각각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의 장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장관이 보수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침부터 해서 개선의 의무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교섭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 포함해서 교육부나 복지부, 노동부 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 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처가 공동으로 공통 대응을 해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그 안에 아마 범정부 대책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중검토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 마.....

○박홍배 위원 이 법이 제정되나 안 되나 사실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섭 요구가 오면 교섭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법은 매우 명확하게 교섭의 의무를 주는 거 같아서.....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은 저희들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교섭의 의무를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고 정부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1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법안 통과가 아무리 생각해도 6월 3일 전에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서 전진숙 위원님은.....

○전진숙 위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청소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역사 이래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꾸로 그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산하였던 여성단체, 여성시설, 청소년시설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드리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성평등가족부가 자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다른 타 시설하고, 너무 열악한 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건가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안이고 그것을 일정 정도 비교 검토를 해서 수정안 정도만 남아 있어

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년 뒤에 하자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안 되시면 여기서 거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한규 어차피 서명옥 위원님이 없어서 지금 통과가 안 됩니다. 다섯 분이 있어야 통과되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한 분의 위원이 저렇게 강하게 요구할 때는 그래도 동료인데 의견을 따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법사위나 전체회의 통과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부처 의견 들어서 법사위에서 바뀌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성평등가족위에서는 그러면 2027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시간은 10개월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정 이행하기 어려우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법에 시행 시기를 수정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검토의견에 다른 법률의 개정이 있는데 이 법을 바꾸게 되면 다른 법률 개정해야 되는 건 통과되면 그 법 개정안은 별도로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부칙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칙으로 개정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100페이지 보시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00페이지,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23조 3항은 보수수준에 관한 거라 중복되는 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1조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청소년 기본법 23조 3항을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는데요. 서명옥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빨리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5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건 제정법이기에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청회는 한 적이 있고요 성평등위 차원에서 안 했는데 이것은 이분들을 위한 내용이고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3)

(15시30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권 3쪽입니다. 청소년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류한 자치입법권 확대에 관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라서 같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류한 내용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까 보류했다고 다른 위원님한테 한 소리 듣기는 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입법권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쪽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외에도 법무부·교육부·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이게 법이 다 똑같은 내용에 번호인데 각 법에다 일괄 정부가 한 겁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어떤 거요? 16항이요? 넘어간 거요?

○전진숙 위원 아니요, 계속 넘어왔던 의안 자체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몇 건

인지……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3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까 게 마지막이었던 거고. 의원님들이 법안을 낼 때마다 정부가 따라와서 이걸 조례를 집어넣은 거지요.

○전진숙 위원 그러시구나.

○소위원장 김한규 이걸 8페이지를 보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돼 있던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 게 수정의 주인 거지요. 2항은 역시 똑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어를 명시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까지 추가한 거네요,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위탁 운영까지.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2항을 살려서 3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8쪽의 현행을 보시면 제2항에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2항을 살려 놓고 개정안의 2항을 3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개정안은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고 위탁 근거를 규정하면서 현행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현행 2항을 개정안 제3항으로 같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명옥 위원 현행 2항을 3항으로 한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들어 있잖아요.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러니까 설치·운영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약간 그런 세부 기준에 대해서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개정안 1항을 보시면 현행 안하고 달리 대통령령이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착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진숙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저희가 잘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박 위원님.

○박홍배 위원 차관님께 질문드리는데요. 미등록 이주청소년 실태를 정부가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에게까지 미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지금 7페이지의 통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보면 508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까지를 보면 5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우리 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부에서는 기초학습이나 한국어교육 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미등록이라고 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을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개념적으로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부모의 체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또는 미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말씀 맞는데요. 이게 미등록이 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민등록증이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출생 등록을 하는 무슨 등록부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알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록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뭘로 확인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래서 교육부나 복지부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임시번호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고도 입학이 가능하고 또 복지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한지아 위원** 청소년도 관할이 복지부 맞지요, 임시번호 부여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19세까지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계속해서 체류 자격이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상태로 아마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진숙 위원** 그거 아닌데, 추방인데.

○**서명옥 위원** 추방인데, 법무부에서 승인되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까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위탁이 안 됐었나 보지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평등가족부 외에도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조금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은 위탁이란 표현이 없지만 설치·운영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시행령에 위임을 한 거지요, 넓게 해석해서 설치·운영으로 보고.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예.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신 것 같으니까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법률에 규정 및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센터의 업무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과 관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9조제2항제1호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미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정서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심리평가 및 집중심리클리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은 신중검토 안입니다마는 우리 부 의견은 개정안을 수정 수용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우울·불안 그리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발달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29조 1항에서 통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울·불안한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7·8호로 이렇게 특별히 호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을 냅니다. 부처 수정의견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의 고립·은둔의 근거·원인을 보면 우울·불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청소년정책관실에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전진숙 위원 그걸 담당하는 지역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예.

○전진숙 위원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미래센터에서, 2개 중복해서 일정 정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울·불안 집중 심리상담 이렇게 했던 게 혹시,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굳이 안 해도 계속해 왔던 걸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혹시 이해관계된 집단 간의 충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심리상담학회 이

런 것들하고?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합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우울·불안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이라든지 종합심리평가를 23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왔고 경계선지능 관련해서도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도 제작·배포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러고 있어서 이거를 별도 조항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연계한다든지 강화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거지 뭔가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한지아 위원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다른 법령에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경계선지능인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의해서 추정을 하면 우리 국민 전체의 약 13.59%, 약 7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복지위에서도 경계선지능 관련되는 지원법인가요, 그것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아직 법령에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우울·불안도 이게 애매합니다. 우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불안은 어떻게…… 이런 선언적인 게 굳이 이 법에 모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추가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이나 또 한지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개별 규정을 일일이 하게 되면 새로 생길 때마다 또 일일이 규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규정이 오히려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응에 더 이로울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규 예, 말씀하십시오.

○전진숙 위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저는 일단 계속 심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복지부에서 재난심리지원 체계 시스템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정신건강과 관련한 것도 청소년은 청소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증가해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마음건강 관련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미래센터도 돼서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정을 해 줘서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각각의 지역에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들과의 점점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판단보다는 그런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 14조를 보니까 지금 이주희 의원님이 낸 법안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는데 추가된 게 딱 두 가지인 거지요, 우울·불안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만드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좀 불분명한 거라든지, 여하튼 보건복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논의가 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그러니까 이 법안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사한 제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15시45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정책관 가시고 한부모가족 담당이 들어오셨군요.

죄송하지만 소개 잠깐만 해 주시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윤아 가족정책관직무대리께서 오셨고요.

그러면 자리에 착석하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명할 수 있는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하고 여성가족부령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3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는 행정상 직접강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9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15시48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3쪽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 및 보수교육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결혼중개업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시에도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교육업무의 민간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직접 위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등록·신고 전 교육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 전에 수료한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의 유효기간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전 교육은 실질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등록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규정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교육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교육의 시의적절성이 떨어지므로 등록 또는 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유효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고일 또는 등

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면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관련 현행법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이 보수교육과 별도로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24조제3항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전 교육과 관련 둘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본인의 질병·사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등록 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 전 교육 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전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전 교육만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에 국내결혼중개업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수교육 용어의 경우 결혼……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홍배 위원님께서 이석하셔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의결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필요한데 이 다섯 분은 지금 법안 논의를 좀 더 할 때까지 가능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상황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하시면……

○박홍배 위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설명이 안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좀 여쭙보겠습니다.

결혼중개업자들 중에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서,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런 규율하는 법안들이 있어서 이 규제들을 좀 피하려는 목적 또 그쪽에서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국내에 사업자를 두지 않고 해외 현지에 사업자를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국내법의 규율 대상인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관련된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업하는 국내 중개업자가 해외,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같이 중개업을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서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국내법상 규

정이 없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이 법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법안을 고민하고 또 개정하고 하더라도 그 법을 근본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국회의 그런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6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음, 보수교육 용어의 경우 결혼중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 전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없으나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사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종사자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의 시기가 모호하므로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내 또 국제 중개업체에게 2년간의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일단 국내 업체에 대한 신고 전 교육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한다는 우리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처 수정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내용이 많아 가지고 쟁점을 쪼개서 의견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23페이지에 항목별로 검토의견이 가, 나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하나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 들으셨겠지만 결혼중개업이 국제결혼중개업이 있고 국내결혼중개업이 있는 상황이고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규교육이 있는 상태고 소위 말하는 보수교육은 없는 상태고 국내결혼중개업은 둘 다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총 네 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현재 없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도 추가할 거냐라는 게 쟁점인 상황이고. 하나하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검토의견 가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경우에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은 정확하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보수교육 의무화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보수교육은 국제나 국내, 두 군데 다 이 개정안에는 그리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야 되고 지금 가에서 말씀하신 국내중개업자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 항목……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에 어떤 내용이 추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마 표준약관이라든지 또 국제 관행 이런 거라는데 과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크게 해 주시지요.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약관 교육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중개업법 관련된 내용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법률에 대한 교육이요?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예, 법률에 대한 교육입니다.

○전진숙 위원 지금은 누가 합니까?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전체 총괄은 우리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이 용어가 이렇게 쓰여져서 잘 모르는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를 그냥 하면 허가됩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국내중개업은 신고로 같음을 합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신고 시에도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국내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국내는 그냥 교육받는 게 없는데 개정안은 신고 전에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법을 보니까 법에도 안 나와 있고 시행규칙까지 쭉 따라가야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가 2시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관련이 1시간,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3시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1시간 이렇게 총 7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네요.

○전진숙 위원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이 찾아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궁금해서, 한지아 위원님 질문을 듣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우리 내용도……

○조은희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전진숙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자세히 하십시오. 왜 자꾸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는 상황을 만드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저는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조은희 위원 아니에요. 딱 좋았습니다. 의원의 품격을 확 높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일단은 국제하고 국내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일회성 교육이니까, 보수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담보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보수교육을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수석님한테 여쭙보는데 이 검토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실효성에 관한, 과태료·벌칙 이런 것에 대한, 중간에 내용 하실 때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받은 적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저희 검토보고서는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조은희 위원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받으셨냐고, 부처로부터.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없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처가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제4조에 국제중개업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이런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도록 돼 있고 등록할 때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이수증 이런 것들을 등록 서류로 보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 요건에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가 그 등록 요건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데 안 받으면 아예 등록을 못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전진숙 위원 더 질의하기 전에요,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가 갖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무게를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의지.

○전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의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설명이 위원한테도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아요.

들으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정부 법안은 아니기는 하지만.

○조은희 위원 아, 설명이 안 됐다?

○전진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본적인 것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서……

○조은희 위원 설명은 보좌진이 들으셨을지도 모르지요.

○전진숙 위원 들었어요?

○조은희 위원 아니, 보좌진이 들으셨을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보좌진이 전화해서 알아봤을 수도 있고.

○전진숙 위원 설명을 하셨습니까, 각 의원실로 다요?

○소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법이다 보니까……

○전진숙 위원 의원입법이라 안 하신 거예요? 점점 지점이 별로 없습니까, 여가부하고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우리의 통과 의지를 물으신다면 높다는 말씀을 드리 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2년마다 하는 보수교육을 빼고는 우리 부에서는 이게 다 시행 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야 결혼중개업에 대한 거래 질서가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아마 의원님들 방의 각 보좌관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차관님, 그러면 이 교육은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서명옥 위원 오프라인. 그러면 반드시 개설자가 교육받아야 돼요, 아니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사업주가 받는 것으로 하는데 교육 방식도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시행령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명옥 위원 탄력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진숙 위원 다 설명을 하고 의지가 얼마나 되냐고 여쭙본 이유가 조정하고 재설정 하고 이런 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기간 2년을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법안이 이렇게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려 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시니……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니,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2년간의 보수교육을 국내나 국제중개업자한테 부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하고 좀 더 검토가 돼야 되 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업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은희 위원 의원입법이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왜 하느냐를 보면, 23페이지 보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당구장 표시 보면. 이런 건데 하여튼 성평등가족부는 국제는 하고 있는데 국내도 교육이 필요하 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그런 거지요, 의원입법 형태기는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국내 업체의 신고 전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여기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두 번째 나 항목, 위임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24페이지 제일 상단 보니까 법 제처가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만들라고 벌써 한 6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정비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 항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신설하는 건데 성평등가족부는 보수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한지아 위원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한 번 받고, 신고 시에 받고 영원히 안 받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부터는 2년마다 보수교육 받도록 하자는 거지요?

○한지아 위원 업계 의견들은 부담스럽다라고……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입법예고 중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90%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이것도 제가 좀 여쭙볼게요. 이것도 보수교육을 안 하면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개정안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까는 그래도 신청할 때 서류라도 있어야지 신청하지만 이것은 넣어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조치들도 함께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도입했으면 한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하잖아. 지금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은 국제중개업체만 등록 전에 합니다.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허가하고 나서는 보수교육이 없잖아요. 네버 에버(never ever)잖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실효성 담보 수단이 같이 따라 와야 되는데 법이 조금 어정쩡하게 발의가 되기는 했네요. 실효성 담보 수단이 없네.

○조은희 위원 그것은 담보를 유예기간 동안 정부 측에서 하실 거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요.

○조은희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소위원장 김한규 할 거면 지금 논의를 해야지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근거를 하나 두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하는 것으로 하고?

○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논의 한번 일단 더 들어 보시지요.

○전진숙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제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결혼중개업자, 보통 국제결혼을 시키게 되면 이 종사자는, 처음에 하면서 종사자 등록을, 영업을 뗄 것 아닙니까? 영업을 뗀 사람도 있고 안에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다 등록을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게, 국제결혼을 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보이지 않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브로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영업을 뗀 가운데서 커미션 먹고 이런 사람들은 종사자로 등록을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사실 개설 요건에 보면 정관하고 종사자 명단 또 사무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1억 원 이상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수료증도 요건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 등록할 때 낸 종사자 명단하고 운영하면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만 그냥 하는 거예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업체 스스로가 자정 기능이 작동할까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하면 업체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명옥 위원 차관님, 보수교육도 반드시 개설자가 교육받도록 돼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될지 종사자도 받아야 될지 하는 부분도……

○서명옥 위원 아니, 그래도 그 범위는 아직 안 돼 있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설자가……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둘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둘 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종사자도 받을 수 있도록……

○서명옥 위원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한지아 위원 궁금한 것은요, 당연히 그 업체들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떠나서 이 보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업체들에서 부담스러워한다가 단점일 것 같고 장점은 뭐니까? 이것을 받음으로써 어떤 선의 기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서명옥 위원 차관님, 한 위원님 질의하고 저하고 똑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하고 개설자, 대표도 같이 보수교육 받는 걸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것은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법안에다가 개설자가 반드시 받도록 하고 개설자가 안 될 때는 예외 사항을 둘 것 아니에요. 두고 개설자가 보수교육을 받고 반드시 한 달 이내라든지 두 달 이내에 종사자한테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 장부도 비치한다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아요?

○한지아 위원 이게 필요한지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국내 업체의 그런 소비자 불만도 물론 많지만 결국은 제일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고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국제중개업체들의 부정행위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2년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정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찾아 주신 그러한 교육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그런 자정작용은 충분히 순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처럼 실제적으로 집행이, 많은 수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보수교육까지 하게 되면 오늘은 통과시키기에 조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조항을 빼고 나머지 법을 통과시키냐, 그러면 해당 조항은 없어지는 것이라 새로 법안을 내야 되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니면 그것을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하고 조항 문구라든지 처벌조항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은 논의를 다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전진숙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너무 복잡한데.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복잡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첫 번째 방법 다시 한번……

○소위원장 김한규 첫 번째는 아예 보수교육은 빼고, 이번에는 국내결혼법에 신규교육만 추가하고 보수교육은 그냥 없애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보수교육을 넣겠다고 하면 오늘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에 처벌조항 같은 것을 넣어서 실효성 확보 조항이……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 구합니다.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저는 1번입니다.

○한지아 위원 저는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2번입니다.

○전진숙 위원 저도 2번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20항 전체를……

○조은희 위원 1번 하고 개정안 내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한규 20항 전체를 다음에 논의하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피곤하셔서 가지고 전체를 다음으로 하자는 것에 압도적인 다수고, 죄송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과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생각하는 국내결혼에 신규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제하에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보수교육은 한다는 의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보수교육을 할 때 차별조항들을 과태료든지 이런 조항도 신설할 수 있게 적절한 부분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예시 같은 것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김한규 이 안건은 이견이 있으시므로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16시16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2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라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다른 두 법과 동일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문구를 집어넣어서 문구를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 전제하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8)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2)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2)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6)

(16시17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3쪽입니다. 성평등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 지정 또는 설치·운

영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남희·이주희·서범수 의원안은 성평등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성평등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 운영 확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김남희 의원안은 중앙성평등센터와 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희·서범수 의원안은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하여 근거를 둘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안과 같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근거를 규정할 경우에는 중앙센터의 사업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앙센터의 고유한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또한 김남희 의원안은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희·서범수 의원안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희·서범수 의원안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안은 센터의 지정 주체에 성평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고 있으며 서범수 의원안도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희 의원안은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센터의 운영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안은 센터 설치 시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이라는 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성평등지수는 매년 변동되는 상대적 수치라는 점, 센터 설치 시 지역성평등지수 외에도 지역 수요 및 센터 설치·운영 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안 제46조의5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안 제46조의5제1항은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를 시정명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김남희 의원안에 대하여 국정과제인 중앙 및 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성평등교육, 전문인력양성, 문화 조성 등 관

런 사업을 수행하던 단체·기관이 이미 있으므로 중앙·지역성평등센터로서 고유한 역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김남희 의원안에 대하여 중앙성평등센터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 현행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 진흥 사업을 기수행 중으로 중복된다는 점, 전국 시도 성평등정책 담당 국장 회의 등 중앙·지방 성평등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라는 점,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강화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센터 신설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지역성평등센터의 경우 기존 기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주희·서범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 및 동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 진흥 사업을 기수행 중으로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센터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기존 기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범수 의원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는 직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센터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성평등가족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직제로 정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조사·연구를 위해서 중앙센터의 고유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처 수정의견을 75페이지에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처 수정의견 더 설명하실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조문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쟁점이 되게 많은 법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평등센터를 뒤편에 두느냐부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에 뒤편에 두는지가 쟁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성평등으로 할 거냐 양성평등으로 할 거냐 이렇게 쟁점이 있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다음에 논의하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하면 신중검토, 부결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거지요, 쟁점을?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내용은 다 들으신 거잖아요. 좋습니다. 오늘 통과 안 하는 건 좋은데 쟁점에 대해서 이해만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쟁점 세 가지가 맞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양성평등센터, 성평등센터 용어하고 그다음에 지정하고 설치·운영 부분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을 구분할지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조은희 위원 중앙센터랑 양평원과의 중복성 문제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많습
니다.

○전진숙 위원 네 가지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 게 있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68페이지에 행안부가 서범수 의원안에만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행안부가 김남희 의원안, 이주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 부정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김남희 의원안은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하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고 판별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주희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의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주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동일한 문제……

○소위원장 김한규 김남희 의원안은 뭐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설치·운영이 아니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논의 안 하는 건 좋고요. 다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안 하신 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이주희 의원님도 법안 내셨는데 안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다음 법안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인선 위원장 법안이라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명확하게 법안을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성평등가족부 명칭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실제로 나왔었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법을 발의를 했던 당사자인 김남희 의원과 이주희 의원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심사에 반드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나중에 우리 당의 간사를 새로 뽑아야 될 때는 전진숙 위원님을 1순위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자리에 안 계시고 이건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논의는 충분히 하고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은 이견이 있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양성평등기본법 23항은 내용이 다른 부분이라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가요?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0쪽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조은희 위원 이것도 저는 완전 신중검토거든요. 지금 하면 부결입니다. 이것도 이주희 의원님 제실 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같은 법안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제명은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간사님께서 부결을 강하게 외치셔 가지고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본인이 게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부결하는데 없을 때 부결하면 위원들끼리…… 그리고 사실 이건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다음에 적절하게 순서를 조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이견이 있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16시29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7쪽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소득요건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이인선·이연희·민형배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폐지할 경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 및 선지급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폐지를 입법화할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관련 규정을 이연희 의원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소득요건 폐지를 입법화할 경우 법률 처리 시기,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는 소득요건 폐지를 입법화할 경우에는 이연희 의원안과 같이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는 제도 도입 취지 감안 시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선지급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정안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왔고 또 선지급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에 소득요건을 폐지할 경우에, 사실 이게 양당 의원님들 모두, 우리 위원장님도 발의하실 정도로 취지와 내용이 중대한데 200억 정도의 추가 재정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재정 당국이 어떻게 동의를 하나. 그래서 최근에 예산 부처와 노력하거나 설득해 보고 또 기간을 주면 하겠다라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선지급제 시행할 경우에 강제징수 결과는 언제쯤 확인 가능한지. 재정 당국은 회수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징수 준비가 제대로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회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우선 이 법안 관련해서 발의가 돼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는 이 제도 취지 자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소득기준 삭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전에도 이런 논의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한 축이 회수이기 때문에 회수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뒤에 얘기를 하자는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올해 초에 회수라는 절차를 시작했고 지금 고지와 독촉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회수율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걸 가지고 협의하기가 사실은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입장도 저희가 설계한 회수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로……

○조은희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저희가 회수 단위가 6개월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회수 전체가 고지하고 독촉하고 소득 조사해서 강제징수하는 한 세트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세트는 아마 6개월 후에 나올 것 같고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첫 번째 회수가 언제 나오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첫 번째는 6월 말이면 그거에 대해서 7월이

나 8월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상황을 보고, 저희가 세팅과 회수의 시스템이 되는지를 보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성평등가족부는 통과시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시행시기는 좀 늦추자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예,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쨌든.....

○조은희 위원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예, 그렇지요.

○한지아 위원 법 통과 자체를 좀 기다리자는 얘기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이 논의 자체를 우선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된 후에 다시.....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서 소득요건 폐지하는 것은 일단 빼자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시겠지만 이게 여야 합의를 지난 정권 때 했는데 입장이 달랐지요. 제가 속해 있던 정당에서는 소득요건 없이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소득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위소득 100%, 200% 논의하다가 150으로 합의를 힘들게 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여전히 선지급은 제한 없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예산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자가 적어서? 왜냐하면 이게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중위소득 관련된 서류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저희 의원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사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던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게 선지급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관리원에서도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올해는 그래도 업무처리가 조금 더 효율화됐고 사람들도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신청 건수와 집행률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돼서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늦춰지거나 이룰 수는 있으나 이것을 처음에 진행했던, 요청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논의를 계속했는데 우리가 안 정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논의를 계속해 왔던 건데.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 선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먼저 고민하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에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안 주고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줘야 될 문제인가? 물론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우선 먼저 해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선의 원칙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이렇게 선지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 선지급을 해 놓고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 중에 회수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훨씬?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한 회수율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쨌든 선지급을 하고 나서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훨씬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지금 신청을 100% 한다라는 전제하에 되면 2026년도 선지급 예산이 324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갈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겁먹고 이것을 소득수준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소위원장 김한규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였지요, 정확하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7월 1일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작년 7월 1일이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약 50%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약 50%요.

올해는 아직 3월이니까 수치가 안 나왔을 거고.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324억 원인데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사실 지금은 너무 초반이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희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못 하냐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소득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 대상자가 적어서 올해 사실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소득수준을 없애더라도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요구한 건 아닌데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신청이 생각보다 소득기준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더 들어도 200억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사실은 그 말씀도 맞는데 재정 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선지급을 하는 것도 한 축이지만 저희가 회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세팅을 한 제도기 때문에 이 회수가 처음…… 저희가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강제징수하는 것을 넣고 이걸 시스템화를 한 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작동을 하고 정말 회수가 되는지를 보고 그 뒤로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사실 저희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6개월 후에 이게 작동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한 후에 그 뒤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전진숙 위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들어도 200억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전향적으로, 지금 소득요건을 넣어 놔더니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폐지해서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하는 거는 정부 노력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과장님이시지요? 죄송하지만 어느 부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현재는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가족정책과장이면서 지금 가족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직무대행을 하시는군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지금 이 선지급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은희 위원 한번 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원래 회수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처음에 100%,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회수해서 돌아오는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소득요건을 넣다 보니까 자꾸 회수해서 돌아오는 돈하고 예산하고 생각하실 텐데 회수는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송 수행을 잘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그 해 들어와서 그 해에 써야 될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아니어서, 당장 올해 300억이든 500억을 쓰고 내년, 내후년에 회수가 돼도, 6개월이 아니라 원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고.

○조은희 위원 그러게요.

○소위원장 김한규 지난 정부에서는 예산상의 한계가 좀 있어서 정부가 그런 의견 내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다행히 그때보다는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명옥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한규 예,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여기에 소득기준을 두셨는데 저는 어린이 양육비는 다른 소득기준하고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소득기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돈 많은 아빠들이 양육비를 안 내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언론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아이 키우는 양육자—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지요—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실행률도 많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소득기준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회수가 안 되는 건 변호사들을 더 채용을 하고 보수를 더 주고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지금 원장님도 변호사시긴 한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다른 법조 직역에 비해서 처우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데잖아요, 별도로 독립 원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부처의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예산 부처가 돈이 많으니까 다 하시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고려해서 이 정도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처 반대도 무릅쓰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부처가 위원님들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다……

○조은희 위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석한 위원들이 전부 다 목소리를 높이더라……

○전진숙 위원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밀어붙였다……

○소위원장 김한규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부분은 소득수준을 폐지하고, 그렇게 되면 중위소득 관련된 조항들을 다 없애고 필요서류에서도 그런 부분을 빠지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다만 준비하는 기간을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정도로 주시면……

○소위원장 김한규 올해 예산 남았다는데 무슨 1년입니까? 그냥 빼서 하면 되는 거지요.

○서명옥 위원 1년 너무 길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왜 1년이 필요합니까?

○서명옥 위원 계속하고 있는 제도인데.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이거 하려면 관련된 하위법령이랑 다 고쳐야 되고 그 시스템도 지금 소득 연계를 하는 걸 바탕으로 건보랑 다 시스템을 맞춰 놓은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서……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서명옥 위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삭제하는 건데.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다고 해서 즉시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개월 정도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조은희 위원 예.

○서명옥 위원 6개월 충분합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성평등가족부 실무자들이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할 말 있으시면 명확하게 말씀으로 하세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의견 있으시면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그 말씀한 것 6개월이면 실무적으로 괜찮을지 여쭙봤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원들이 피곤하니까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 저희는 분명히 법적 권한을 갖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99쪽,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불이행 기준과 관련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채무가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채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도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문구를 보니까 막 헛갈리는데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단 취지 자체가, 왜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일부 주고 나서 미지급자 아니니까 나는 제외해 달라라고 하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그 일부 지급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건데, 원래 약속된 평균 양육비보다 얼마 미만인 거지요? 평균 양육비보다 미만인 경우는 전부 다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사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현행 상황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액 불이행한 경우가 당초였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7만 원씩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3개월의 기간을 다 전액 불이행·불이행·불이행이 아니라 이 3개월의 평균에 불이행한 금액이 선지급 미만이면 신청 대상을 하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 요건 중의 하나가,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에 있다 보니까 3개월 평균 금액이 20만 원 이하 되더라도 집행금액이 적은 경우는 한 달은 집행금액 이상으로 다 채워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의 집행금액을 가진 사람이 30만 원, 0원, 0원 이렇게 보내면 이 30만 원 나누기 3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30만 원이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그 해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행을 한 경우가 되다 보니

까 이 사람은 결국은 선지급 신청의 대상이 못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고 저희가 이것을 대통령령이나 어떤 제도개선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 법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어쨌든 있어서 법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안이 나와서 저희는 이 안이면 커버가 될 것 같아서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설명이 어렵네요.

○한지아 위원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전진숙 위원 아니, 그게 그거 같습니다. 이해 못 했습니다. 한지아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은 이행하는 횡수로 돼 있어서 채무자가 횡수를 여러 번 해서 소액으로 3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면 횡수는 이미 이행한 거로 되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수만 여러 번으로 소액을 이행한 경우가 배제되는 상황이라서 월 단위로 환산하는 평균 금액으로……

○전진숙 위원 금액으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횡수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 횡수가 아니라.

○전진숙 위원 월 단위……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월 단위인데요. 그렇지 않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행하기로, 그러니까 채무관계계약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월 단위 환산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를테면 매달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매달 조금씩,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이걸 여러 번 나눠서 50만 원을 채우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안 주다가 마지막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요. 그것도 안 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원래 안 됩니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만약에 3개월로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주다가 3개월치에 100만 원을 주면 그 달은 집행금액 이상을 이행하기 때문에 이행한 달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나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선지급 금액 미만이 되면 그 사람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수를 금액으로……

○전진숙 위원 이의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연희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내 주셨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긴 한데 법안을 이렇게 문구를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봐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전진숙 위원 이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또는 횡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건 없어지는 겁니까? 법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바꾼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여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만 문제 되

는 거고 그 사람이 회피하기 어렵게 일부러 문구를 어렵게 만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안대로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01쪽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양육비 선지급 요건에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양육비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한지아 위원 저도 왜 삭제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검토입니다.

○전진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요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03쪽입니다.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과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소득요건 삭제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 요청 사항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보훈급여 관련 자료는 부정수급한 선지급 강제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앞에서 소득요건 삭제 규정과 동일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님 그리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희 김한규 박홍배 서명옥 전진숙 조은희 한지아

○출장 위원(1인)

이주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